



(사)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 회원님들께,

한국조경학회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우수등재학술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편집 위원회는 회원님들의 제언을 학회지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귀하께 여기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회원님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논문의 표(table), 그림(figure), 참고문헌(reference)의 영문 표기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표나 그림의 내용 가운데 영문 표기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고유명사 등을 억지로 영역하여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참고문헌은 (영문을 표기하지 않은) 문헌, 제목, 저자 등을 임의적으로 영작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문헌을 찾기 어렵게 하고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 하고자합니다.

1. 한국조경학회지 투고 규정」 6조 4)항 및 10조 2)항을 일부 개정

기정	<p>6. 원고의 작성</p> <p>1) 연구논문의 원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다.</p> <p>4) 논문 본문 내 표(Table)와 그림(Figure)의 제목과 내용은 모두 영문 혹은 국문과 영문이 병기되어야 한다.</p> <p>10. 주와 인용문헌</p> <p>2) 모든 인용문헌은 영문 혹은 국문과 영문이 병기되어야 한다.</p>
개정	<p>6. 원고의 작성</p> <p>1) 연구논문의 원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다.</p> <p>4) 논문 본문 내 표(Table)와 그림(Figure)의 제목과 내용은 모두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거나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한다.</p> <p>10. 주와 인용문헌</p> <p>2) 모든 인용문헌은 영어로 표기하되, 영문 표기가 없는 인용문헌은 한국어 또는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한다.</p>

2. 투고규정 일부 변경안은 12월 1일 투고 원고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학회와 학회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 많은 논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조경학회 편집위원장 최정민 배상

문의: 한국조경학회 사무국(02-565-2055)